

## I. 개 관

## II. 협력정부

## III. 중앙정부

- 대통령과 내각

## IV. 지방자치제도

1. 주정부
2. 지방정부

## I. 개 관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sup>1)</sup>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2010년 월드컵 개최지로 이 전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국가 중 하나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21만 9,090km<sup>2</sup>의 면적과 약 4,900만 명의

1)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체계

김 동 균  
(한국법제연구원)

### [ 특 집 ∨ ]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남아공의 정부형태는 헌법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하원(National Assembly, 40명의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간접투표를 통한 대통령 선출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내각책임제적 성격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하원과 더불어 9개의 주(州)를 대표하는 각 10명으로 구성된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 총 90명의 의원)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으며, 상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원제는 남아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강화와 연방제 국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

남아공의 수도는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Cape Town)이고,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는 프리토리아(Pretoria)는 행정수도이다.<sup>3)</sup> 그리고 정치와 문화의 도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주정부와 주 의회가 위치한 블룸폰테인(Bloemfontein)은 사법수도이다. 또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도시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비록 수도는 아니지만, 남아공 최대의 도시로서 경제의 중심지이며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다.

남아공은 대륙법과 보통법의 혼합법제를 가지고 있다.<sup>4)</sup> 남아공의 헌법<sup>5)</sup>은 1996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6차례 개정을 하였는바, 이는 현대 헌법 중 가장 진보적이고 완성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남아공 행정체계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2) 남아공의 79%는 흑인이며, 네덜란드계, 영국계 등의 백인이 9.6%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 인구조사 기준). 그리고 이 외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지칭하는 컬러드(colored)가 약 8.9%, 인도인 등 아시아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3) 남아공의 수도가 3곳으로 분리된 이유는 1910년 케이프(Cape), 나탈(Natal),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Orange free State), 트란스발(Transvaal) 등 4개 지역이 남아프리카 연방(Union of South Africa)으로 통합될 때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4) 이는 남아공의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다.

5) 남아공의 헌법 제3장부터 제14장까지는 통치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아공 헌법 제3장은 중앙정부와 주(Provinces)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원칙(Cooperative Government)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의회(parliament)와 대통령 및 행정부(The President and National Executiv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장은 주(Provinces), 제7장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 제8장은 사법부(Courts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헌법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국가기관(State Institutions Supporting Constitutional Democracy)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장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원칙 및 감시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은 국가안보(Security Services)를 규정하면서, 국군(Defence), 경찰(Police), 정보기관(Intelligence)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장은 전통적 지도자(Traditional Leaders)에 대해 규정하고, 제13장은 재정(Financ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장은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을 규정하면서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국제법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II. 협력정부

남아공의 정부는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으로 구성된다(헌법 제40조 제1항).

정부의 모든 영역과 각 영역 내 모든 국가기관은 ① 공화국의 평화, 국가적 단결 및 불가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화국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전체로서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책임질 수 있으며, 결속력 있는 공화국 정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공화국 및 국민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⑤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헌법적 지위, 제도, 권한 및 기능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헌법에 따라 각 영역에 부여되는 권한 또는 기능을 제외한 권한 및 기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⑦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지리적, 기능적, 제도적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⑧ 우호관계의 조성, 상호보조 및 지원, 공통의 관심사 상호 통지 및 협의, 각자의 조치 및 법률 상호 조율, 합의된 절차 준수, 상호간 소송 절차 방지의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성실로써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제정법은 정부 간 관계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한 구조 및 제도를 수립 또는 규정하여야 하며, 정부 간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기구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헌법 제41조 제2항).

정부 간 분쟁에 관련된 국가기관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구 및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법원이 확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을 다른 국가기관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헌법 제41조 제3항).

## III. 중앙정부

### 1. 대통령과 내각

####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서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국가의 단결과 공화국의 발전을 증진시켜야 한다(헌법 제83조). 공화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대통령은 ① 국법을 집행

(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② 국가 정책을 수립 및 시행, ③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 ④ 법률을 입안 및 발의, ⑤ 헌법 또는 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치를 통해 다른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한다(헌법 제85조).

### (1) 선거

하원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그리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하원은 하원의원 중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주재는 헌법재판소장이 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시간 및 날짜에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제86조). 대통령 당선자는 하원의원의 직위가 중단되며,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인함으로써 대통령직에 취임한다(헌법 제87조).

### (2)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직에 취임한 즉시 시작되며,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종료된다. 대통령직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의 기간은 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헌법 제88조).

### (3) 권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며, ① 법안에 대한 승인 및 서명, ② 법안의 합헌성 재검토를 위해 법안을 하원에 다시 회부, ③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 ④ 특별한 정무 수행을 위해 상원, 하원 또는 국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부 수반 이외의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모든 약속 결정,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⑦ 국회제정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소집, ⑧ 외국의 외교관 및 영사를 환영 및 접견, ⑨ 공화국의 대사, 전권위원 및 외교관과 영사를 임명, ⑩ 범죄자의 사면 또는 집행 유예, 벌금, 형벌 또는 몰수를 경감, ⑪ 훈장을 수여하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84조)

#### (4) 대통령의 해임

대통령이 ①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 위반, ② 중대한 직권 남용, ③ 기능 수행이 불능한 경우, 하원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모든 자는 대통령직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며, 어떠한 공직에도 종사할 수 없다(헌법 제89조).

#### (5)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공화국에 부재 중이거나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대통령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① 부통령, ② 대통령이 지정한 장관, ③ 그 외 내각 구성원이 지정한 장관, ④ 하원의장(하원에서 다른 하원의원 중 한 명을 지정할 때까지)의 순서로 해당 공직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인한 다음, 대통령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는다(헌법 제90조).

## 2) 내각

내각은 내각의 수반인 대통령과 부통령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헌법 제91조 제1항).

### (1) 부통령과 장관의 임명

대통령은 하원의원 중에서 부통령과 장관을 임명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며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하원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하여야 하며 하원의원 중에서 장관을 선출할 수 있고, 하원 외에서 최대 두 명의 장관을 선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 1명을 하원 내 정무수석으로 임명하여야 한다(헌법 제91조). 또한 대통령은 하원의원 중에서 여하한 인원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하원 외에서 장관을 보좌할 최대 2명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임할 수도 있다. 임명된 차관의 권한 행사와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해당 차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헌법 제93조).

### (2) 내각의 책임과 의무

부통령은 정부의 기능수행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헌법 제91조 제5항). 장관은 대통령이 그들에게 위임한 행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책임지며, 내각 구성원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내각 구성원 공동 및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내각의 구성원은 헌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92조).



### (3) 내각 기능의 이전과 이양

대통령은 포고를 통하여 ①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법률의 집행과 ② 법률에 의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권한 또는 기능을 특정 내각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헌법 제97조).

대통령은 현재 부재 중이거나 해당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없는 내각 구성원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또한 내각 구성원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할 권한 또는 기능을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해당 내각 구성원과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 간 협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 제정법에 부합하여야 하고, 대통령에 의한 포고시 발효된다(헌법 제98조).

### 3) 주행정에 대한 중앙행정부의 개입

어떤 주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행 정부는 주의 행정부에 지침을 발표하고 의무의 불이행 범위를 설명하며, 당해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술한다. 또한 ① 필수적인 국가 표준을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표준 요건 충족, ② 경제적 단결 유지, ③ 국가안보 유지, ④ 해당 주가 다른 주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의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주행정부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할 수 있다.

중앙행 정부가 위의 ①, ②, ③, ④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의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행정에 개입하는 경우, 그러한 개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입 통지서를 상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원이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개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개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입이 지속되는 동안 상원은 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 사항을 중앙행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헌법 제100조).

### 4) 행정결정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서면 결정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각 구성원이 결정에 부서하여야 한

다(헌법 제101조).

### 5) 불신임 동의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과 그 외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은 모두 사임하여야 한다(헌법 제102조).

## IV. 지방자치제도

### 1. 주정부

공화국은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 프리 스테이트(Free State), 하우텡(Gauteng), 콰줄루 나탈(KwaZulu-Natal), 림포포((Limpopo), 음푸말랑가(Mpumalanga), 노던 케이프(Northern Cape), 노스 웨스트(North West),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의 9개 주로 구성된다(헌법 제103조 제1항).

#### 1) 주의 행정권

각 주의 행정권은 각 주의 주지사에게 귀속된다. 주지사는 ① 해당 주의 주 법률을 시행, ② 남아공 헌법 별표 4 또는 5에 나열된 각 기능 영역에 속하는 모든 국법을 시행(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 남아공 헌법 별표 4 및 5에 나열된 각 기능 영역 외의 국법을 해당 주 내에서 집행(해당 국법의 집행이 국회 제정법에 따라 해당 주 행정부에 위임된 경우), ④ 각 주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 ⑤ 각 주의 행정기관 및 부처의 기능을 조정, ⑥ 각 주의 법률을 입안 및 발의, ⑦ 헌법 또는 국회제정법에 따라 주 행정부에 위임된 그 밖의 모든 기능 수행을 통해 다른 주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한다. 주 행정부는 남아공 헌법과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을 가결한 경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헌법 제125조).

#### 2) 주지사

##### (1) 주지사 선거

주 의회 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그리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

의회는 주 의회 의원 중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을 주지사로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의 주재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주지사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주지사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시간 및 날짜에 실시하여야 한다.<sup>6)</sup> 주지사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인함으로써 주지사직에 취임한다(헌법 제128조).

#### (2) 권한 및 기능

주지사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기능을 담당한다. 주지사는 ① 법안에 대한 승인 서명, ② 법안의 합헌성의 재검토를 위해 해당 법안을 주 의회에 다시 회부, ③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해당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 ④ 특별한 정무 수행을 위해 주 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⑤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⑥ 국법에 따라 해당 주에서 주민투표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헌법 제127조).

#### (3) 임기 및 해임

주지사의 임기는 주지사직에 취임하는 즉시 시작되며, 주지사직이 공석이 되거나 차기 주지사 당선자가 주지사에 취임할 때 종료된다. 주지사직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주지사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주지사로 선출된 경우, 해당 주지사 선거와 차기 주지사 선거 사이의 기간은 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지사가 ① 공화국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 ② 중대한 직권 남용, ③ 기능 수행 불능의 경우 주 의회는 전체 주 의회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주지사를 해임할 수 있다(헌법 제130조).

#### (4) 주지사 권한대행

주지사가 부재 중이거나 주지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주지사직이 공석일 때, ① 주지사가 임명한 주 집행위원회 위원, ② 다른 주 집행위원회 위원이 임명한 주 집행위원회의 위원, ③ 주 의회 의장(주 의회에서 다른 주 의회 의원 중 한 명을 임명할 때까지)의 서열대로 해당 공직자가 주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지사의 권한대행은 주지사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는다(헌법 제131조).

6) 헌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3) 주 집행위원회

주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수반인 주지사와 주지사가 주 의회 의원들 중에서 임명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지사는 주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며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헌법 제 132조).

#### (1) 책임 및 의무

주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주지사가 그들에게 위임한 행정 기능을 책임진다. 주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에 대해 주 의회는 위원 공동 및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헌법과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이 가결된 경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정기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133조).

#### (2) 기능의 이전 및 이양

주지사는 포고를 통해 다른 위원에게 위임된 법률의 집행과 법률을 통해 다른 위원에게 위임된 권한 또는 기능을 주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재 중이거나 해당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없는 주 행정위원회 위원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위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헌법 제137조 및 제138조).

### 4)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지방의회에 지침을 발표하고 의무의 불이행 범위를 설명하며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술한다. 또한 ① 필수적인 국가 표준을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표준 요건 충족, ② 해당 지방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 ③ 경제적 단결 유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정부가 위의 ①, ②, ③, ④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경우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주의회 및 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지방 정무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

원이 그러한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 내각 구성원이 그러한 개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예산안 또는 해당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세입 확보 대책을 승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 정부는 지방의회의 해산을 비롯하여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 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행정관을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임시 예산안 또는 세입확보 대책 승인을 하고, 해당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위기로 인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또는 자신의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 해당 주 행정부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재정적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회복 계획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복 계획은 국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권 행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회복 계획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을 포함한 입법조치를 승인할 수 없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를 해산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신임의회로 공표될 때까지 행정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임시 예산안 또는 세입 확보 대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회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상기 이유로 해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복 계획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복 계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주 행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주 행정부가 지방행정에 개입한다(헌법 제139조).

##### 5) 불신임 동의

주 의회가 전체 주 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주지사를 제외한 주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주지사는 주 집행위원회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주 의회가 전체 주 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주지사에게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주지사와 그 외 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임하여야 한다(헌법 제141조).

## 2.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및 입법권은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법 및 주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지방 공동체의 지방 정무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는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또는 권리를 저해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헌법 제151조).

### 1) 협력정부 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역의 사안을 관리하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지원 및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위, 제도, 권한 또는 기능에 적용되는 국법 또는 주 법률의 초안은 국회 또는 주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조직화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법률 초안과 관련해 의견을 정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되어야 한다(헌법 제154조).

###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사안 및 국법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국법 또는 주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당해 지방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단, 헌법 제149조에 언급된 법적 상충으로 인하여 작용이 불가능하게 된 국법 또는 주 법률과 지방 조례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법 또는 주 법률이 작용하지 않는 한 지방조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① 지방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②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안을 처리할 역량이 있는 경우에 협정에 의하여, 그리고 당해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기능 수행에 수반되는 사안과 관련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56조).